

서울특별시 강동구 역사문화 기록보관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

「서울특별시 강동구 역사문화 기록보관 및 운영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의 규칙」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6년 3월 18일

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의장



1. 제안이유

강동구의 역사적·문화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조사·수집 및 보존·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,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구민의 자긍심 고취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 (안 제1조 ~ 제2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 (안 제3조)
- 다. 기록보관 계획 (안 제4조)
- 라. 구민활동가 위촉 및 위탁 (안 제5조 ~ 제6조)
- 마. 조사대상 및 기록물의 생산 (안 제7조 ~ 제8조)
- 바. 실물자료의 수집 및 역사문화의 보존 (안 제9조 ~ 제10조)
- 사. 보관장소 및 공개 (안 제11조 ~ 제12조)
- 아. 대여 및 변상, 활용 (안 제13조 ~ 제15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[참조 : 의회사무국장,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5, 전화 : 02)3425-7388, FAX : 02)3425-7292, E-mail : soymilk1714@gangdong.go.kr]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- 나.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에는 법인·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다. 기타 참고사항